

#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[1유형]

## 「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」

### 참여기업 모집 공고

부산광역시와 (재)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부산 지역 IT/SW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「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」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2년 12월 14일

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

#### I 사업목적

-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인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IT/SW 인력 부족을 부산 디지털혁신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청년일자리 발굴·연계를 통하여 부산지역 IT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

#### II 사업개요

- 사업내용 : 부산지역 IT산업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재정부담 완화 및 청년층의 안정된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청년 취업 인건비 지원 및 청년인센티브 등 지원
- 지원기간 : 2023. 3. ~ 2025. 2.(최대 24개월 지원)
  - + 청년인센티브 지원기간 : 2025. 3. ~2026. 2.
  - ※ 청년인센티브 지원 : 24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 및 유지 시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원(최대 1,000만원)
- 지원대상
  - 기업 : 부산 지역 IT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
  - 청년 : 부산 거주 (만 39세 이하)의 미취업 청년 20명
- 모집규모 : 부산 IT산업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20개사 이내
- 지원내용 : 신규 청년인건비 지원, 자기개발비, 청년인센티브 등
- 주최 : 행정안전부/부산광역시
- 주관 : (재)부산정보산업진흥원

## □ 지원대상

## ○ 기업

- 부산 지역 IT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20개사 이내
  - ※ 우대사항 :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교육수료생 채용기업
- 제외분야 :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 분야

•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**사업 참여 배제(시행지침)**

-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
 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  -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
  -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\*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\*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
  -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'23년 신규유형간 중복 참여 배제[다만, 기존유형(지역정착지원형)과 신규유형간의 중복참여는 예외적으로 인정]
  - 부당한 업무지시,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
  -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·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
  - 사업장 귀책으로 인해 중도포기가 발생한 경우 대체채용 불가하며, 해당사업장은 6개월 간 후순위로 관리(사업장 귀책 여부는 지자체장 판단)
  -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\*를 제기하며 지자체장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걱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'23년 신규 사업 선정배제 가능(기존 채용인력은 잔여기간만 지원)
- \*언론보도, 국정감사 등 비위사업장으로 지목되어 관련자가 기소된 경우 등

## ○ 청년

- 사업개시일(2023.1.1) 기준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20명
- 지역요건 : 사업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유지  
(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6개월 내 전입)
- 업무내용 : 채용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IT관련 실무 업무

## □ 지원내용

## ○ 신규 채용 청년 인건비 지원 : 1인당 월 180만원 지원

- 기업별 청년 채용 인원 최대 2명 (사업 운영현황에 따라 조정가능)
- ※ 지원금은 근로계약서 월액보수(기본급)을 대상으로 함  
(4대 사회보험 사업장 부담금, 퇴직충당금, 실비보상적 수당 등 미지원)

## ○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: 1인당 연 30만원 지원

- ※ 도서구입, 자격증 응시시험 등 자기개발비

## ○ 청년 역량강화 교육 지원(기본[필참], 전문 교육[선택])

- ※ 청년이 전문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업무시간 중 교육 참여를 지원

## ○ 간담회, 세미나 등 네트워킹 지원

## □ 의무사항

- 참여 청년의 일자리 제공, 근로 지원, 직무능력 향상 지원
- 사업 목적 내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교육, 네트워킹, 행사 등의 참여 지원
- 고용유지 및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

## □ 지원조건

- 청년 임금의 23% 이상 사업장 자부담(연봉 2,800만원 이상)
  - 월 급여 233.4만원 : 지원금 180만원, 사업장 자부담 53.4만원 이상
  - ※ 연봉 2,800만원 이상 보장

### • 근로계약

- 참여 청년의 근로계약은 사업장(기업)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
- 표준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하되, 각 세부사업 내용에 따라 필요 시 일부 변경할 수 있으나, 청년 일자리의 안정성과 근무환경의 질 제고를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
  - \* 각 사업장의 기존 근로계약 특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, 지자체 및 청년과 협의 없이 근로조건을 약화는 불가
  - \* 참고법령 : 근로기준법 제2조·제15조·제17조, 근로기준법시행령 제8조

### • 참여 청년의 법적 지위

- 참여 청년은 근로기준법(제2조)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,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(3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)가 아니며, 세무신고 대상이 됨
- 참여 청년은 4대 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 기한을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되며,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

### • 근로조건

-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, 지자체 및 청년과 협의 없이 근로조건을 청년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
- 휴일과 휴가 등은 「근로기준법」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, 근로계약서에 명시
-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,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

### • 임금

- 임금은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 가능
- 4대 보험료의 경우 연간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에서 자체부담
- 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
- 연봉 2,800만원(월 233.4만원)을 최소기준으로 함
  - \* 같은 세부사업 내에서 사업장 간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, 근로계약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참여 청년들에게 고지해야 함
  - \* 청년의 기본 월급여에 해당함(기타 실비보상적 수당, 성과금 등은 별도)

## □ 지원금 집행

- 지원금 지급시기는 매월 참여기업이 청년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증빙자료 (참여기업→수행기관 제출) 검토 후 참여기업 통장으로 입금
  - 참여인력의 중도 퇴사 시 해당 사실을 사업 수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, 퇴직월의 인건비는 퇴사일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
  - 참여기업은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중도 포기자 발생 통보서를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  - 참여인력의 근무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, 파견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, 코로나19 등 특수상황일 경우 재택근무 등 가능
  -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한 유사 지원금을 타 정부기관·지자체로부터 중복지원 금지
  - 참여기업의 의무와 책임 준수여부는 현장점검 및 자료요청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할 수 있음(채용인력 배치 근로사업장 수시 점검, 지원기업 영업 여부 및 고용유지 현황 파악 등)

### •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

- 협약서, 근로계약서, 4대보험가입사업자명부, 출근부, 급여내역서, 급여이체내역 등

## IV 추진절차



- 선발기업의 사업포기 및 청년 중도이탈 시 후순위 기업으로 인원배정
- 청년/기업매칭기간 내에 미채용 시 후순위 기업으로 인원배정(매칭기한 : ~'23.1.31.)

※ 채용인원과 채용방법은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가능

## V

# 평가방법 및 기준

### □ 참여기업 선정평가위원회 구성

- 위원구성 : 내·외부 전문가 5인 내외
- 심사방법 : 제출된 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서면심사
- 심사기준(안)
  - 사업자등록증 기준 소재지가 부산인 기술기반 창업기업 여부, 기업일반현황, 사업아이템 개요, 청년인재 고용계획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·선정

평가항목	배점	심사내용	비고
기업역량	20	기업의 규모 및 성장성, 주력 제품(서비스) 혁신성	
기술가치	20	관련 기술 보유 수준 (특허, 인증, 투자 등)	
근로조건	30	고용형태(정규직, 계약직), 초임임금수준 및 복리후생 등	
채용의지	30	담당 업무내용, 청년 인재 필요성, 청년 인재 성장 지원 계획 등	
합 계	100점		

※ 증빙서류 필수 제출

### ○ 가점, 감점기준(안)

- 가점요소(30점) ※ 증빙가능한 경우에 한함(사규 및 인증서 등)

-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(BDIA) (15) : BDIA 잡페어 참가기업(3), BDIA 수료생 채용기업(12)  
※ '21년, '22년 BDIA 수료생 채용기업(제출서류 : 채용인원 수료증, 4대보험가입자명부)
- 채용청년임금(10) : 채용 청년의 임금 수준(연봉 2,800만원 이상 구간별 가점 부여)
- 고용우수인증 (5) : 청년친화강소기업, 고용우수기업, 가족친화인증 등 고용인증

- 감점요소(△40점)

- 동일유형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사업장
  -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사업 연속 참여기간 2년 초과(△15)  
※ 이전 사업을 통해 참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(전환)하고 있는 경우 예외
  - 중도포기 발생(△20~10)  
※ 사업장 귀책사유로 참여청년의 중도포기 발생 1회 이상(권고사직 등)  
※ 6개월 이내 중도이탈 2회 이상(이유불문)
- 부정수급이력(참여배제)
- 계속고용의지(△5~0) : 최근 1년 이내 인원 감축 현황

## □ 참여기업 선정

- 참여기업 선정 : 평가점수 60점 이상 고득점순, 20개사 이내
  - ※ 고득점 순, 20개사 후순위 기업
- 지원인력 : 청년 20명(기업별 최대 2명)
  - ※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채용인원 변경가능

## ○ 선정절차 및 일정

모집공고	⇒	선정심사(서류)	⇒	최종선정	⇒	청년/기업 매칭
참여기업 모집		내·외부전문가 심사		참여기업 선정 통보		청년-기업 면접
공고일 ~12.23.(금)		12.28.(수)		12.30.(금)		~'23.1.31.(화)

※ 상기 일정은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## VI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### □ 참여기업 신청

- 신청기간 : 2022년 12월 23일(금) 18:00까지
  - ※ 신청업체 미달 시 재공고 예정
- 신청방법 : 부산일자리정보망([www.busanjob.net](http://www.busanjob.net)) 홈페이지 → 청년부산잡스 → 부산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→ 「부산정보산업인력육성 청년일자리 지원사업」 기업 신청하기
- 신청서류(제출서류)

- 【붙임 1】 참여기업 신청서
- 【붙임 2】 구인 신청서(기업)
- 【붙임 3】 개인정보 수집이용 · 제공동의서
- 중소기업 확인서 등 단체 해당 확인서 1부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 법인 등기부 등본(법인 제출) 1부
- 신청일 기준 4대 보험 완납증명서, 4대 보험 가입자명부 각 1부
-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(국세청홈택스 발급) 1부
- 최근 3년 고용·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(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) 1부
  - ※ 전체근로자, 월평균보수항목 표시
- 초임임금 명시된 사규(또는 '22년 신규 고용보험가입자 근로계약서 첨부)
-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증명서(특허, 인증 등)
- 기업소개서 1부

## □ 주의사항

-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
-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관련 지침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,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 후에도 기업 선정 탈락 및 지원금은 환수
- 증빙서류 상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삭제하고 제출
- 향후 결정사항은 개별통보하며,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임
- 정부예산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변동 될 수 있음
-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“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”시행지침 (행정안전부)에 따름

## VII 문 의

- 운영기관 : 부산정보산업진흥원, 디지털혁신인재양성단
- 문 의 처 : 051-749-9450
- 이 메 일 : talent@busanit.or.kr

- 붙임 1. 참여기업 신청서 1부,  
2. 기업 확인서 1부,  
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. 끝.